

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 『**바보의 나눔 통장**』 특약
2. 변경의 필요성 : 기부금 출연기간 종료
3. 주요 변경 내용 : 기부금 출연기간 연장 및 수수료 우대서비스 기간 연장
4. 신규 조문 대비표 : 하단 참조
5. 시행(예정)일자 : 2019년 1월 21일
6. 사후보고 근거 : 해당사항 없음
7. 상품의 특징 : [첨부] 참조
8. 약관본문 (전체) : [첨부] 참조
9. 기타 참고사항 : [첨부] 참조

출연합니다. 단, 본항의 기부금은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	출연합니다. 단, 본 조의 기부금은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	
---	--	--

<개정 전>

2018. 02.14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-약관-001호(2018.01.04)

「바보의 나눔 통장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바보의 나눔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,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제4조 이자지급

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(이하 ‘원가일’이라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

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
 2. 저축예금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- 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.

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- 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익월 말까지 월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②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합니다)의 월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우대요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월10회까지 제공하며, 장기기중희망등록자에 대해서는 우대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) 하나카드사의 ‘바보의 나눔카드’ 보유
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및 우대서비스 내용)

- 1)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 - 2) 자동화기기, 폰뱅킹(ARS),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 - 3)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 - 4) 수표 발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③ 본 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

제6조 기타

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,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「바보의 나눔」에 연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. 단, 본항의 기부금은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

<개정 후>

2018. 2. 14 개정

2019. 1. 21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-약관-179호(2018.12.03)

「바보의 나눔 통장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바보의 나눔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하며,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제4조 이자지급

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온 익일(이하 ‘원가일’이라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

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

2. 저축예금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
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.

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①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익월 말까지 월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②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 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합니다)을 **매월 말일 평가하여** 우대요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1일부터 말일까지 월10회까지 제공하며, 장기기중희망등록자에 대해서는 우대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) 하나카드사의 ‘바보의 나눔카드’ 보유
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및 우대서비스 내용)

1)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
2) 자동화기기, 폰뱅킹(ARS),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
3)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
4) 수표 발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
③ 본 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

제6조 기타

은행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수를 계산하여, 이 예금의 가입 좌수당 100원을 재단법인 「바보의 나눔」에 연1회 기부금으로 출연합니다. 단, 본 조의 기부금은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.